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8852
----------	-------

제안연월일 : 2026. 5.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상정	회의내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201	박용갑 의원 등 10인	'24. 8.27.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4.11.13.)
				소위 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26. 4.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069	김정재 의원 등 11인	'26. 1.16.	상정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6. 4. 1.)
				소위 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26. 4.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532	김도읍의원 등 11인	'26. 3.18.	상정	※ 소위원회 직접회부('26. 4.13.)
				소위 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26. 4.15.)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2026. 4. 16.)는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교통혼잡과 안전 문제를 유발하는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은 대부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며 상당 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래 전 조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부담금이 불합리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으로 하여금 조례로 정한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37조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을 “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의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을 “제2항제1호”로, “시설물”을 “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부과대상”을 “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시설물
2. 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제37조의 제목 중 “산정기준”을 “산정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용자 수”를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화하거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정한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제2호 중 “제37조제2항”을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특례) 시장은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 2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제정하거나 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생략)</p> <p>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u>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u>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p> <p><u><신 설></u></p> <p><u><신 설></u></p> <p>③ · ④ (생략)</p> <p>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p>	<p>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u>-----.</p> <p>1. <u>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u>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시설물</p> <p>2. <u>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 -----</p>

⑧ · ⑨ (생략)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
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
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
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신설>

-----.

⑧ · ⑨ (현행과 같음)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이용자의 규
모와 특성-----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
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항
에 따른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
유발계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화하거
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
향 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
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정한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장은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의 교통혼잡이나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생략)
2.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3. ~ 5. (생략)

제43조(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

-----.

1. (현행과 같음)
2. 제37조제3항-----

3. ~ 5. (현행과 같음)